WTO시대의 국제상사중재제도와 클레임관리의 새 방향*

A New adminstration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and the Claim Under WTO

정 기 인**

Ⅰ. 문제의 제기
Ⅱ. 국제상사중재제도의 경제성을 저해하는 문제들
Ⅲ. 국제상사중재제도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
Ⅳ. 국제상거래 발달에 상응한 기존의 개혁조치들
Ⅴ. 결 론

Ⅰ. 문제의 제기

지금 세계는 다원화, 중층화, 신속화하는 경제적 혼돈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국제적으로 기존 개념의 시장은 사라지고 새로이 변모하고 있다. 과거의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던 공급자들의 파워는 사라지고 소비자들이 시장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소비자가 시장에서 하는 일은 공급자를 평가하고 분석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는 일이다. 소비자들의 평가 안목은 정보화 덕분으로 국제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어서 공급자들이 가지고 있던 안목과 대책으로는 이들을 만족시키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불만은 예전과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된 것이다.

WTO의 출범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변화를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국가들은 현안의 경제적 문제에만 급급한 나머지 그 후속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에게 맡겨 둔 채로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는 WTO가 출범한지 만 3년이 지난 현재에도 아무런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WTO시대의 소비자들은 분쟁해결에서도 고객만족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WTO시대에 국제상사중재의 소비자들인 상인들이 클레임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평가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 보고 이에 걸맞는 국제분쟁처리제도로서의 국제상사중재제도에 관해서 각국의 제도를 평가하고 공급자와 소비자간에 생길 수 있는 경제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제도로서의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WTO시대에 국제상사중재제도가 지닌 문제는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국제상거래는 무역장벽의 해소로 인해 신속화 되는 데 비해 오히려 사법제도화해서 이용가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②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연구들에서 WTO시대의 상거래가 근본적으로 써비스, 지적재산권, 농산물 교역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장되었음에도 이 분야의 분쟁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③ 정보화 시대에 새로이 각광 받는 전자상거래, 텔레마케팅, 인터넷 비즈니스 등과 같이 진보적인 국제상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의 처리방법으로 기존의 상사중재제도로는 신속성에서 미흡한 것임을 간과하고 있다.

④ 국제상사중재의 발달에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달리 규정된 중재법규들인데 WTO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된 채로 변화가 없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국제상사중재제도는 WTO시대에 가정할 수 있는 새로운 소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새 시대에 맞는 제도로 거듭 태어나지 않는다면 소송제도에 비해 경쟁력이 없게

될 것이다. WTO의 참 의미와 이를 수용하는 중재제도로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논문의 구성은 I장에서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논급하고, II장에서 국제상사중재제도가 WTO시대에 확장적용되는 데 장애가 되는 현실적 문제들을 살펴본 후, III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국제무역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경우를 가상하고 당사자들이 현재 분쟁해결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가격할인, 클레임 배상등의 방법 가운데 경제적 손실이 어느것이 큰 것인가를 한국의 사례를 통해 검증하여 WTO시대에도 국제상사중재제도가 필요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IV장에서는 몇가지 제도적 수정에 대해서 제안을 하였다.

Ⅱ. 국제상사중재제도의 경제성을 저해하는 문제들

국제상사중재제도가 국제무역에서 생기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들게 함으로써 무역의 증진에 큰 기여를 하는 爭訟처리방식이란 것은 오래전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중재의 본질은 분쟁당사자가 현재 또는 장차 발생가능한 분쟁의 해결을 법원에 부탁하지 않고, 자신들이 선정한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 부탁하는 것인 만큼, 그러한 해결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1] 그러나, 법관과 같이 소정의 판단훈련을 쌓은 바가 없는 민간인인 중재인에 의한 경험적 판단에만 사건의 해결을 맡겼을 경우에는, 당사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을 간과할 수도 있고, 절차를 미숙하게 운영하여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국은 법원으로 하여금 불가피한 사항들에 한하여 간섭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2] 오늘날의 상사중재의 대상은 거의가 국제무역에서 발생되는 국제상사분쟁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자국의 중재판정이 효력을 보장받기 위하여는 현재와 같은 상이한 중재법제의 보완 내지 통일이 필요하다.

1) Anthony Walton, Russel on Arbitration (18th ed.), Stevens & Sons, 1970, p.1.
2) Martin Domke, *The Law and Practice of Commercial Arbitration*, Callaghan & Co., 1968, §401~§403

특히, WTO가 출범하여 분쟁의 성격이 다양화 된 상황 아래에서는 중재의 효력 보장 문제는 매우 긴박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다.

WTO출범 이후 국제거래는 증가하고 다양한 새로운 기술에 의해 개발 된 통신수단에 의해 신속히 이루어 지는 데 비해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는 그대로 머물고 있어서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신속성을 해치는 제반 요인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만약 거래는 신속해지는 데 분쟁처리는 그 이상으로 더디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제상사중재의 비결은 신속한 해결에도 있지만 중재판정의 효력 보장에 있다. 결국 상사중재판정의 효력을 신속히 보장 받을 수 있는 국제적 시스템이 마련 되어야 소송에 비해서 이용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다.

한 국가내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을 타 국가에서 강제집행을 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국가간 중재제도의 법적 차이는 중재절차와 중재판정의 효력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 결과 외국중재판정의 승인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서 국제상사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을 주저케 하거나, 종래의 방법대로 소송에 의지하게 함으로써, 상사중재제도의 편리한 점이 부득이 외면당해야 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초래되었다.[3)]

이와 같이 국제상사중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당면하는 문제는 중재에 관한 각국의 국내법규가 상충되는 점인 것이다. 각국 국내강행법규와 주로 抵觸되는 당사자 자치의 제한 문제는 중재인의 선임요건, 중재조항의 효력, 중재판정부의 管轄權存否에 대한 결정권, 중재판정부의 절차상의 재량권, 중재 및 실질분쟁관계에 적용되는 주거법선정상의 규제, 중재본안사항에 대한 법원의 감독 및 통제권 등에 제약을 주고 있어서, 분쟁처리제도로서의 경제적 기능을 소송보다도 저하시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둘째의 문제는 중재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한 국가의 국내임의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경우 적법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반면 적용법규가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상호간 이질적 법률환경 아래서 국제상사중재를 진행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등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주요한 것들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 Gerald Aksen, *Enforcing Arbiraion Clauses*, AAA, 1970, p.66.

1. 중재계약[4]의 효력과 관련한 저해요인

중재계약은 분쟁을 소송에 의하지 않고 중재로써 해결하고자 소송관할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각국은 국내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각국들의 법은 다소 틀리게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혼돈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각국들은 중재계약의 한 방법인 중재조항(사전 중재계약)과 중재부탁(사후 중재계약)을 굳이 구분하여 그 효력을 차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국가들로는 벨기에, 미국,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폴란드, 스위스, 포르투갈 등이 있다.

② 이 중에서도 미국,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포르투갈의 중재법규는 중재조항에 직접 효력을 확정치 않고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때 중재부탁서를 작성케 하고 있다.

③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독일, 영구,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터키 등의 중재법은 중재조항과 중재부탁서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5]

④ 중재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국가와 같은 주권체이거나 공공단체의 경우 이제까지는 각 국가별로 중재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주권면제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국가나 공공단체는 중재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나라마다 지니고 있는 것으로 그 근원은 전통적 법사상에 의한 초월적 국가주권의식에서 연유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중재의 신속성을 해치는 것들로써 WTO시대에는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할 사항이다. 국제거래의 당사자들은 자기가 속한 국가의 중재법제에 관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지를 알수 없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단순한 통일이 필요하다. 중재는 소송과 같이 반드시 변호사가 법정대리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단순화 하고 그 이용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

4) Arbitraion agreement의 국역에서 중재계약 또는 중재합의로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영미계약법상은 contract(계약)와 agreement(합의)가 consideration(約因)의 유무에 따라 구분되고 있지만 우리 법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계약으로 통칭하고 있으므로 arbitration agreement는 당연히 중재계약으로 번역해야 하리라고 본다.

5) 다만 독일은 중재조항에서 장래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고자 할 때 例擧주의를 요한다. 모든 분쟁을 개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獨民訴 제1026조).

2. 중재의 대상을 제약하는 비경제성

국제상거래에서 생기는 분쟁은 다양하다. 특히 정보화 시대의 거래는 당사자의 처분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애매한 것들도 많다. 국제적으로 중재의 대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모든 권리이면 해당될 수 있다.

이 자유처분의 범위는 나라에 따라 다르다.

① 프랑스는 회사의 무효주장은 중재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하면 이탈리아에서는 같은 주장이라도 논의의 대상이 된다.

② 노르웨이에서는 중재조항은 분할구매계약서에는 삽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③ 스위스와 미국에서는 회사의 해산, 주주 사이의 계약특허와 면허, 총회의 결정사항 등 광범위한 상사분쟁을 중재의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6]

이러한 중재의 대상은 각국마다 다른 관계로 그 범위를 일정하게 축소함으로써 소송과 경쟁 관계를 떠나 특정분야의 분쟁당사자들이 오로지 그 편리성과 효율성 때문에 중재를 선택하도록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의도는 이미 국제적 시험을 거쳐 보완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통일된 법의 형태로 새 모습을 내놓도록 진전되어 왔다. 예컨대, 유엔이 1958년 6월 제정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약칭 뉴욕협약)은 제 1조에서 상사중재의 대상을 當該國家의 상법상의 상행위를 "상사"로 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일정하게 규정하였고 또한 그 판정에 관한 시비를 거의 제거한 바 있다.

특히 국제상사중재의 경우에는 국내적 요소를 축소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가능한 한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 즉 중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범위를 되도록 명시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3. 중재인의 자격에 대한 이질성

중재인의 자격 요건은 일반적으로 법적인 적격성이 있어야만 된다. 그러나 나라마다 법적 요건을 달리하고 있어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폴란드에서는 사법부 인사는 중재인이 될 수 없으며, 이탈리아, 그리스와 포르

6) Pieter Sanders, *Arbitrage International Commercial,* Paris: Dallez et Sirey, p.15.

투갈에서는 중재인은 그 나라 국민이어야만 될 수 있다.[7] 그리스와 스위스의 몇 주에서는 여자는 중재인으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법률적 중재의 경우 직업법조인만이 중재인이 될 수 있다.

중재인의 구성인원수에 관하여도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스위스에서는 홀수의 중재인으로 판정부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터키 등에서는 중재인의 수가 짝수라 하더라도 중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정부 중재인이 짝수인 경우 판정에서 중재인의 결정이 가부가 동수일 경우는 당사자가 해결하도록 하던가 아니면 법에 정한대로 처리된다. 대개의 경우 법들은 가부동수의 판정은 無效로 規定하고 있다.[8]

중재인의 지명방식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소수국가에서는 중재계약 체결시에 중재인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는가 하면, 한국, 독일, 일본,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에서는 중재계약에서 중재인의 선정방법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가 1인씩 중재인을 선정하고 선정된 2인의 중재인이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하게 하고 있다. 만약 중재인이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면 법원에 의하여 지명되게 된다.[9]

미국 Uniform Arbitration Act 제3조는 만약 당사자간 중재계약에서 중재인 선정 방법에 관하여 약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모든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재인의 지명 방법과 적격성에 관하여 상이한 규정은 중재의 신속성을 해치는 것들로써 정보화시대에는 부적합한 구가별 규정들이다. 물론 뉴욕협약이나 기타 지역별 중재조약들에 의해 치유되고 있기는 하나 중요한 것은 국내법규들이 변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법규들은 변화가 없는 채로 국제조약들만 무성하게 만드는 것은 새로운 혼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4. 당사자 자치의 적용범위

각국의 중재에 관한 국내법규들은 당사자들이 중재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자치원칙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스페인은 법률적 중재의 경우에는 그

7) C. Barelay, *The ECE Arvitration Agreement,* p.238.
8) 독일민소법 제1033조, 한국중재법 제11조 2.
9) 독일민소법 제1028조, 일본민소법 제788조, 798조.

러한 자치권을 불허하고 있다.[10]

당사자들이 중재절차를 약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재인들이 적법한 규칙을 정하여 적용하도록 대개의 나라는 허용하고 있다. 즉, 한국을 비롯한 독일, 일본, 영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미국, 핀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위스(몇 주는 예외), 스웨덴, 터키 등이 그러한 국가이다.

반면에 폐쇄적인 입장을 취하는 나라도 있다.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포르투갈(법률적 중재의 경우), 스위스(몇 주) 등은 그러한 경우 소송절차를 적용케 하고 있다.

중재인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더라도 公序에 구속받음으로써 실정법에 관한 적용은 어느 정도 있게 된다. 우의적 중재인이라 하더라도 놀음의 빚을 갚으라고 판정할 수는 없다. 이것은 곧 중재인의 관할권에 대한 것과 같이 공서가 우의적 중재인에게 제한을 주는 것이다.

국제상사중재에서 아직도 혼돈을 주고 있는 것으로 국가에 따라 우의적 중재인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나라는 법으로 우의적 중재인을 구별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는 등으로 그 오해의 소지는 많다.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그리이스, 이티리, 폴란드, 포르투칼, 스위스, 터키 등의 국가는 법률적 중재와 우의적 중재를 따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성격은 획일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중재인의 역할을 하면서 그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라 공서에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중재와 기술상의 차이가 있을 분이다.

반면 단일 중재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이나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미국 등의 국가에서 중재인의 자격과 역할은 우의적 중재인과 구분하기 어렵고 특히 법적 공서에만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양자간에 차이가 없다. 영국만은 특별한 사건에서 중재인이 법적 문제를 기술케하는 등 법원의 유보가 있었으나 이 조문도 1979년 영국중재법에서 폐지함으로써 기타 국가와 같이 되었다.[11]

5. 중재판정의 요건

중재판정에 관한 법제에서 두드러진 차이는 판정이유의 유무이다. 영국, 미국,

10) Pieter Sanders, *op. cit.*, p.16.
11) UNCITRAL 제14차 회기보고서.

그리고 터키(우의적 중재인에 한함)에서는 판정에 이유를 제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태리, 폴란드, 포르투칼 등 대다수 중재법제는 판정에 이유를 기재하도록 법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판정에 이유를 달지 않은 외국중재판정에 대해 폴란드나 독일, 일본 등 국가에서 법원은 집행을 허용한 예가 있었다. 이는 엄밀히 말해서 공서의 저촉이지만 국제공서를 국내공서와 구별하여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예가 있다해서 모든 경우에도 집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제의 통일은 필요하다.

미국은 이러한 법적 상충을 보완하고자 통상을 유지하던 한국을 비롯한 18개국과 중재의 효력보장에 관한 쌍무조약을 체결한 바 있다.[12] 중재판정의 효력보장문제는 중재에 종국적 존재가치를 부여하는 것인 만큼 중재의 효력성에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문제는 뉴욕협약이나 기타 지역별 중재협약에 의해 거의 해소된 것으로 볼수 있으나 판정의 집해에서 법원은 아직도 국내법을 존중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 하므로 국내법의 개정만이 WTO시대에 적법한 분쟁해결 제도를 보장하는 길이다.

6. 불복절차

중재판정은 원칙적으로 종국적인 해결이라는데 그 위미가 있다. 그러나 몇몇 나라는 법으로서 판정에 대한 상소를 허용하거나 또는 상소에 대한 명문이 없으므로써 재정에 대한 상소를 묵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상소는 二審중재판정부에 하거나 법원에 상소하는 방법이 있다.

독일은 법에서 상소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이번 중재판정부를 구성하여 상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로 모든 조합들은 이심중재재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심중재판정이 내린 후에 집행이 허용된다.[13]

오스트리아는 법원에의 상소는 금지되나 이심중재판정부에 상소하는 것은 중재계약에서 당사자가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14] 오스트리아는 법원에의 상소는 금지되나 이심중재판정부에 상소하는 것은 중재계약에서 당사자가 약정

12) M.M. Cohen, "A Venue Problem with the Arbitration Clause,"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Vol.7 No.3, April 1976, p.546.
13) Dr. Ottoarndt Glossner, *ICCA YearBook,* Vol. Ⅳ, 1979, p.76.
14) Dr. Werner Melis, "Austria Arbitraion," *ICCA Year Book,* Vol. Ⅳ, 1979, p.39

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노르웨이와 폴란드도 실제 운영은 이와 유사하게 하고 있다. 한편 이심중재에의 상소를 불허하고 법원에의 상소를 허용하는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폴란드(법적 문제에 한해서), 포르투갈 등이 있다.

그 밖에 법원에 중재판정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거의 모든 나라가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다른 방법으로 터키, 포르투갈, 스페인에서는 판정의 무효를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반면 판정에 대한 상소를 일체 금지하는 나라도 있는데 영국, 덴마크, 스페인, 판란드, 이태리, 스웨덴, 스위스, 터키 등이 그러한 예이다. 국제 상사중재에서 사법적 감시는 불가피하지만 중재의 특성과 국제적 성격을 감안하여 본다면 중재는 단심으로 족한 것이며 상소의 허용 문제는 현재로서는 재고되어야 할 단계인 것 같다.

이상에서는 국제상거래분쟁의 처리제도로서의 국제상사중재는 현재 이질적 국내법규들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완전히 발휘할 수 없는 형편임을 자세히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저해요소들만 제거할 수 있다면 상사중재의 효율성은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전제아래 만약 국제상사중재제도가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단일 제도와 단일 법규에 의하여 시행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제도가 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로서는 희망일 뿐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이미 국제연맹에서 그러한 시도를 한 바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이를 보완하여 국제연합에서 뉴욕협약을 성립시켜서 큰 성과를 보았다. 이에 힘입어 유엔은 1966년 국제경제이사회 산하에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를 특별위원회로 창설하여 국제상사중재의 통일화를 꾸준히 추진하여 온 바 있었다.

유엔의 노력 덕분에 오늘날 무역인들의 국제상사중재에 대한 신뢰는 한층 높아졌으며 그 이용율은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 유엔이 추구하는 목표는 협약의 형태보다는 이질적 법제를 국제적 보편성에 맞추어 하나의 제도에 흡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키 위하여 대망의 표준국제상사중재법(Standard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이 탄생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표준중재법을 채택한 나라들은 아직도 소수에 불과하며 국제거래분쟁은 불안한 가운데 국제상사중재에 의해 해결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다. 우리는 무역분쟁이 얼마나 당사자에게 경제적 손실이나 기회를 상실케하는지 경제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하 III장에서는 클레임의 해결 방법 여하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Ⅲ. 국제상사중재제도의 경제적 기여도 분석

무역거래에서는 분쟁이 발생되게 마련이다. 문제는 클레임의 발생보다 그것을 처리하는 효율적인 제도가 있느냐에 있다. 분쟁 당사자의 주장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3자의 개입은 객관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분쟁처리제도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클레임처리의 지연은 역효과가 상승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로 이어 진다. 이러한 요구에 의해 국제상사중재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아 왔으나 WTO시대에도 그러한 역할을 계속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서는 그 경제적 역할에 대해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WTO시대에는 국경없는 교역시대를 향해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쟁금액의 대형화, 분쟁내용의 복잡화가 예상된다. 무역분쟁은 국가적으로나 기업에게나 경제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다른 나라의 예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한 상사중재원의 사례를 통해 무역분쟁의 심각한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보기로 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클레임을 알선, 조정, 중재에 의하여 처리하여 왔다. 이 가운데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알선이고 중재는 약 10%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중재원이 알선으로 처리한 클레임은 일단 외국 수입상들의 주관적 주장을 객관적 관점에서 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종결짓기에 편리한 장점이 있다. 만약 외국 수입상이 그에 대한 불만을 가졌다 하더라도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개 승복하는 것이 통례였다. 중재는 당사자간 이견이 알선에 의하여 좁혀지지 않을 때 시도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처리건수가 적었다.

하여튼 중재원이 꾸준히 밀려오는 클레임을 유효적절하게 처리해 온 것이 그간 한국무역의 배후 힘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상사중재제도의 대명사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처리한 클레임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평가하여 「클레임의 신속 처리제도」가 한국무역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를 분석하는 동시에 「상사중재제도」의 역할이 어떻게 기여하였는가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1. 클레임의 신속처리와 사회후생관계

(1) 무역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클레임의 발생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결과 한국무역에는 잠재적인 클레임요인이 짙게 깔려 있으며 이는 중화학공업의 확대와 더불어 계속 팽배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수출이 신장되면 클레임도 함께 증가한다는 결론은 일견 설득력조차 있다. 그러나 무역이 신장된다고 클레임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사회후생적 측면에서 볼 때 무역을 계속해야 할 이유가 없게 된다. 무역에서 발생되는 클레임이 미미한 때는 문제시 될 수가 없었으나 클레임의 절대액이 높은 경우는 한국 무역상품에 대한 세계시장에서의 반감이 높아가고 이는 전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외부불경제를 존재시키게 된다.

한편, 개별기업을 보면 클레임의 발생은 내부불경제의 원인이 되므로 평균비용의 상승효과와 함께 이익감소 내지 적자를 초래한다.

이러한 사항을 볼 때 클레임은 건전한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비공식적 개별면담 내지 좌담회 등에서 무역상사의 실무부서 직원들이 말한 데 따르면 클레임 금액은 통상적으로 수출액의 3%가 된다고 한다. 물론 이 금액이 모두 賠償되어 나간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제반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계속되는 거래인 경우는 受主를 위해 다음 주문가격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거의 받아들여 준다고 하겠으며 일부 새로운 거래당사자간에는 논란의 여지가 많겠으나 아무래도 수출상은 약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

纖維부문은 원래 클레임이 많다 그렇다고 타부문(잡화, 기계, 전자, 화학 등)은 클레임이 적다고 볼 수 없다. 섬유에서 클레임이 많다는 얘기는 비공식적으로 불평하는 것이 수출품의 약 30%에 이르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며 실제 피차간에 양보할 수 없는 약 3%의 클레임은 기타부문에서도 같다고 보아 옳다. 타부문에서는 불평은 적으나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식으로 제기되는 클레임이 주가 된다고 볼 수 있다.

(2) 비교우위에 미치는 영향

위에서와 같은 사실을 놓고 볼 때 단순한 숫자놀음이 아닌 현장의 클레임은 우리 나라에서 계속 집계하는 통계를 무색케 하고 있다. 반면 정확히 제시된 바 없는 음성적 클레임을 추산한다는 것은 어렵다. 다만 클레임은 당분간 수출액의 3% 범위 내에서 발생되고 있어서 수출액이 증가되면 클레임 금액도 따라서 증가된다는 사실만은 믿어야할 것 같다.

이러한 모든 가정을 놓고 볼 때 제기된 클레임(수출액의 3%)에서 약 30%는 배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수출액의 1%가 클레임으로 배상되고 있다는 결론이다. 97년의 경우는 약 10억$이 클레임으로 지급되었다는 추정이다.

클레임 금액이 많이 배상될수록 그만큼 국제경쟁력은 약화되고 이는 면에서는 비교우위가 비교열위로 전환되는 사태도 발생될 수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경쟁이 치열하고 수출시장에서 제품에 대한 대체재와 보완재가 많은 불리한 여건의 국가로서는 비교열위의 문제 이전에 거래의 중단이나 수요의 감소와 같은 부정적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완전경쟁이 지배하고 소비자는 제한된 소득에서 각국 상품의 효용과 가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소비자선택을 한다고 가정할 때 클레임이 발생된 수출품은 현재에서 판매가 부진하여 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재고의 대가와 부대비용, 履行이익(expected profit) 등은 곧 수출업자에 부담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만약 생산시설과 제품 품질관리에 좀 더 투자하여 품질을 향상시킨 후 수출하였다고 가정할 때 그 투자비용이 클레임금액보다 크다하더라도 계속적 효과면에서는 절대로 유리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수한 품질은 장기적인 수요를 창출하므로 수요는 탄력적이 되며 차츰 규모의 생산을 통하여 가격을 낮추면 대량판매가 예상된다.

이처럼 클레임의 관리는 사전적인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클레임이 발생된 경우는 사후적으로「迅速히 처리하는」 것이 그 악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그러한 「신속한 처리방법으로 상사중재」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2. 클레임처리 지연이 주는 경제적 문제들

(1) 수요에 미치는 영향

클레임이 발생되는 경우 처리가 지연 되면 무역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상사중재 또는 조정 등과 같은 신속한 제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막상 클레임이 발생 되었을 때 신속히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클레임이 실제로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며, 또한 클레임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그리고 그 예방을 위한 품질관리와 가격정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클레임이 발생될 상품을 수입자측에서 보면, 그 상품은 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하고 수요가 감소한다. 이것은 직관적인 판단이므로 과연 과학의 입장에서 엄밀히 분석할 때,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인가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수출상품을 X라고 가정하고 이 상품에 瑕疵가 있었다고 하자. 이때 시장에는 완전경쟁이 지배하고(독과점은 없다고 가정), 소비자는 제한된 소득에서 가능한 최대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각 재화의 효용(품질조건 포함)과 각 재화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소비선택을 한다고 가정하자.

수입자가 X재를 시장에 내놓았을 때 소비자는 품질에 불만을 품고 구입을 기피하게 된다. <그림-1>에서와 같이 공급(수출)은 완료된 상태에서 X재의 총가격이 OD에서 고정된 채 수요가 줄어든다면, 수요곡선은 DD′ 로 회전한다. 이때 X재의 P′ 가격에 대한 수입수요는 OQ에서 OQ′ 로 줄고, QQ′ 의 재고가 발생한다.

수입상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 원래의 가격(P′)을 R′ 로 낮추면, 수요는 OQ′ 에서 OQ″ 로 늘어나지만, 원래의 수입량인 OQ에는 훨씬 못 미친다. 따라서 수입상이 재고를 완전히 처분하기 위하여는 가격을 T′ 까지 낮추어야 할 것이다. T′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수입상이 손해를 보는 금액은 PP′ T′ T가 될 것이며, 이 금액이 수입상이 제기하여야 할 클레임액이 된다.

한편, 수출상이 자신이 상품의 질을 높일 수 없는 처지라면, P′ 가격으로 OQ만큼 공급(수출)하여 재고(클레임)를 발생시키기보다는 R′ 가격으로 OQ′ 만큼 수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란 것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수출상이 굳이 P′ 가격으로 수출하여 <그림-2>에서처럼 U점에서 소비가 이루어졌다면 수출량은 OQ′ 가 된다. 수출상에 따라서는 P′ 가격으로 OQ′ 를 수출하는 것이 R′ 가격으로 OQ″ 만큼 수출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수출상이 P′ 가격으로 OQ′ 를 수출하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안전한가? 같은 <그림-2>에서 이에 관해 보면 수요곡선 DD′ 에서 소비자의 최대 만족점(균형점)은 무차별곡선 I 과 접하는 R점이다. 만약 P′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의 U점은 R점보다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U점을 지나는 무차별곡선 II는 무차별곡선 I 보다 원점 O에 가까우므로 소비자의 만족은 적다. 따라서 수출상은 R′ 가격으로 OQ″ 만큼 수출하는 것이 소비자의 반감도 없고 안전하다. 즉, R′ 가격에서 수출이 이루어지면 클레임의 발생은 예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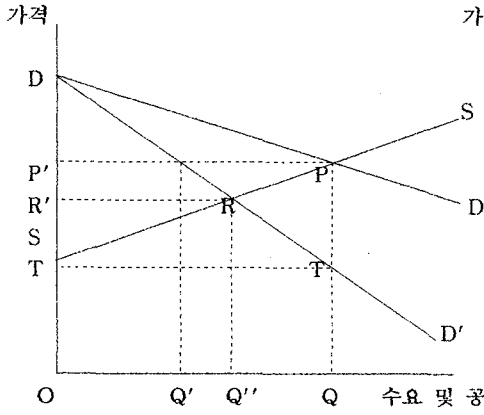

<그림-1> 품질불량에 대한 클레임금액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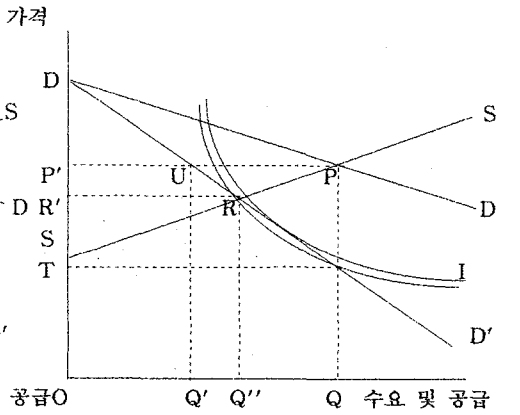

<그림-2> 저질상품에 적정 수출량 분석

그러나 R′ 가격으로 안전하게 소량을 수출하는 것은 현대 수출마케팅에서 볼 때 소극적 방법이며, 또한 기업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정 이윤이 발생하겠는가의 문제를 준다. 클레임예방을 위하여 가격을 낮추고 생산량을 줄이는 소극적 방법을 쓰는 경우와, 가격을 다소 높이더라도 품질개선비용을 투입하여 R′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어느 쪽이 기업측이 유리할 것인가.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그림-3>을 보면 R′ 가격 제품에 TV만큼 비용을 투입하여 품질을 고급화한 후 V′ 가격으로 판매하면 기업의 공급곡선(한계비용곡선)

은 SS곡선에서 S′S′곡선으로 이동한다. 이때 공급곡선이 균형을 이루는 점은 V점으로 OQ′′′양이 된다. 두 개의 점 R과 V에서의 기업측 이익을 보기 위하여 각 점에서의 생산자잉여를 비교하여 보면 V점에서는 삼각형 S′V′V가 되고, R점에서는 삼각형 SR′R이 각각 생산자잉여이다.

그런데 삼각형 S′V′V가 삼각형 SR′R보다 크므로 V점에서의 기업측잉여가 높다. 그러므로 기업측으로서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상품의 질을 개선한 후 가격을 받고 수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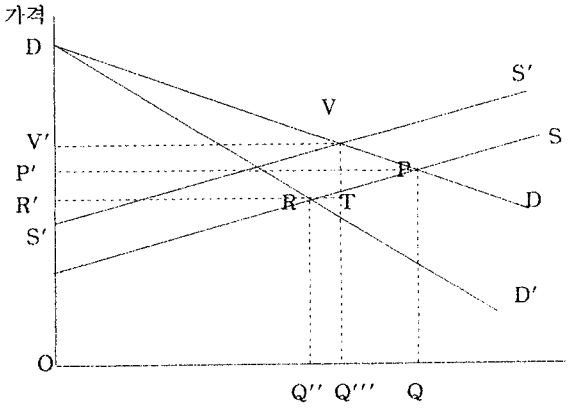

<그림-3> 품질개선을 위한 투자효과 분석

(2) 클레임 신속처리 절차의 영향

정부에서는 클레임이 국가적 대외신용을 손상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상품에 대한 반응을 불러 일으켜 수출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확신 아래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클레임 抑止정책을 펴왔다.

통상적으로 클레임의 관리방식은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다. 첫째는 스스로 상도의적 입장에서 클레임을 처리하도록 방임하여 주고 법에 위반되는 사안일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민형사의 책임을 적법절차에 의하여 묻는 방법이며, 둘째는 상거래 질서가 문란하고 상인들의 의식수준이 낮아서 클레임처리를 자유의사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행정부가 행정명령 등 기타 조치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스리는 방법이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한 마디로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 국가의 환경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구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후자의 방법이 시행되고 있고, 이 방법에 의하여 과거 많은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수출 US $1천억을 초과한 막강한 수출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이러한 시점에서 아직도 한국의 클레임관리방식에 변화가 없어도 좋은가 하는 문제를 해명하고자 한다.

한국의 수출상이 클레임을 발생한 경우,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출상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처벌을 두려워하며, 둘째로 민사상의 법률관계를 몰라 교섭의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셋째로 외환송금의 방법을 이용할 줄 몰라서 다음 거래에서 할인 등의 방법을 쓰기 때문에 현금배상의 경우보다 많은 부담을 지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클레임의 처리는 원래가 민사적 문제이므로 당사자간의 선의의 처리가 중요한데 외환통제라던가 정부의 제재 등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편의적 방법으로 다음 거래시에 가격을 할인해 주는 해결책을 주로 쓰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정상적으로 클레임을 해결하고 책임이 있을 경우 현금으로 배상하면 지출금액은 대개가 할인의 경우보다 작은 것이 통례이다. 이 두 가지 방법에서 어느 것이 기업에 더 큰 부담이 되는가 분석해보자.

예컨대, 한 기업이 상품을 수출하였는데 클레임이 발생되었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이 기업은 공식적으로 클레임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 거래분에서 약 10%의 가격할인을 해주기로 하였다고 가정한다. 이때 기업이 입는 손해는 어느 정도인가.

<그림-4>에서 보면 원래의 수급균형점은 DD곡선이 만나는 P점이었으나 클레임배상액 만큼 다음 주문에서 가격할인(10%)을 한 결과 가격은 S에서 S′로 낮아졌으나 수요량은 여전히 OQ에서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공급곡선은 S′S′가 된다. 따라서 이 거래로 수출기업이 보는 손해는 빗금친 삼각형 SS′P이다. 왜냐하면 이 기업의 생산총비용은 OSPQ인데 빗금친 삼각형 SS′P만큼 더 지출했으므로 기업의 총수입 OP′PQ에서 OSPQ+SS′P를 뺀 것이 실제수입이 된다.

기업측으로서는 만약 빗금친 삼각형 SS′P가 삼각형 P′SP(생산자잉여)보다 큰 경우는 이 거래는 클레임으로 인해 적자라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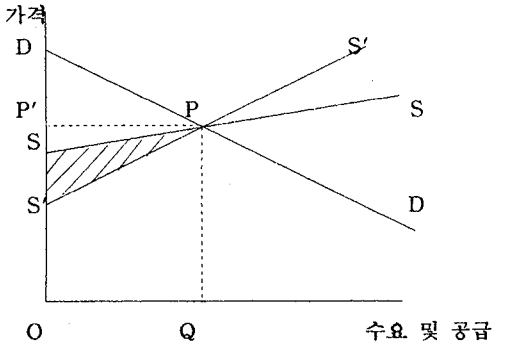

<그림-4> 클레임을 다음 거래에서 할인하는 경우의 효과

다른 한 예로서, 가령 그 기업이 다음 거래시에 가격할인을 해주는 방법이 아닌 공식적 클레임처리에 의하여 10%의 클레임금액을 외화송금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겠는가.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미 공급된 상품의 수량은 변동이 없으나 가격을 10%만큼 할인하여 수요를 OQ만큼 창출시켰다는 뜻이 된다. 이에 대하여 <그림-5>에서 보면 가격 D에서 D′로 할인하면 빗금친 삼각형 DD′P만큼 소비자는 만족(잉여)을 더 얻은 셈이다(소비자에 따라서는 그만큼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원래의 소비자잉여 DP′P에 DD′P만큼이 새로 추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다음 주문가격에서 할인을 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송금해 주는 것이 소비자 만족이 높고 사회의 경제적 후생(소비자잉여+생산자잉여)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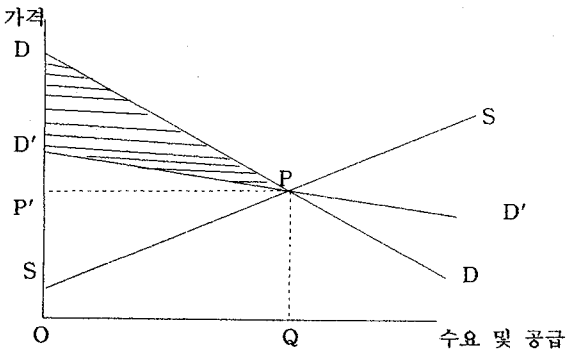

<그림-5> 클레임을 현금으로 배상하는 경우의 효과

이렇게 볼 때 클레임관리방식은 원칙적으로 현금배상하는 것이 좋다. 한국의 수출업자의 수준이 과연 그만한 교섭력을 가졌는가의 여부는 단언할 수 없으나, 수출고를 달성하는 기업의 대부분은 이미 국제기업화되어 있음에 비추어 본다면, 정부방침에 의한 클레임관리를 적극 수용하여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이미 논하였듯이 한국의 클레임발생비율은 수출액의 약 2~3%에 이른다고 무역실무담당부서에서 실토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오히려 무역부서에서는 클레임의 발생을 감추거나 그 양을 줄여 말하려는 것이 보통인 것을 감안할 때), 과연 정부가 앞으로 수출액과 함께 비례하여 늘어나는 클레임을 행정적 방식으로 언제까지 얼마나 효과적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는 의문이다.

이제까지의 예로 볼 때 극히 일부분의 클레임만이 대한 상사중재원을 통하여 관리된 실정이었으므로, 이는 전시효과적인 면에서는 수긍이 가는 것이나 그 반작용으로는 제 3기관이 행정명령에 의하여 개입처리하는 데 불안을 느낌으로써, 다소 더 양보를 하여서라도 지극히 당사자간에 해결하고 숨기려는 경향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분쟁이란 당사자간의 주관적 견해의 차이에서 해결이 지연되는 것이므로, 너무 서둘러 해결하면 한쪽에 불리하다. 당사자간에 의사를 교환하고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은 너무 주관적 주장에 사로잡혀 있는 경향이 있어서 상대방의 주장을 들으면 자신의 주장이 중화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 자연스럽게 대결하면서 주장을 충돌시키는 가운데 시비는 당사자의 편익에 따라 가려지며, 이를 통해 클레임에 대한 처리능력이 훈련되고 교육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제도가 상사중재제도이기 때문에 무역상들은 상사중재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히 제3자의 판단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무역익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무역클레임의 발생은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 문제의 발생은 당사자간의 주관적 차이에서도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공평하고 신속한 해결수단을 마련하여 두는 것만이 간섭할 수 있는 한계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그러한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 필요하며, 한국에서는 무역과 관련된 상거래분쟁을 담당하는 곳이 대한 상사중재원이다. 중재원의 조직과 전문지식은 외국무역에서 생긴 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 충분하다.

중재원의 알선, 조정은 행정력을 뒷받침으로 클레임을 거의 소화하였다. 또한

중재절차와 중재의 결과로 나오는 판정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공정성과 신속을 보여 왔다. 중재원에서 중재판정을 받은 외국인으로서 그 결과에 불만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는 스스로 선택한 해결책이었다는 점에서 공공연히 불만을 토로할 수 없다. 소송의 경우나 기타 어느 해결방법에서도 패자에게는 불만이 다소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중재원이 처리한 중재건은 당사자간 시끄러운 분쟁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예컨대, 무역의 시작때는 상호간에 분쟁을 예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도 없다가 분쟁이 사후적으로 생기면 외국의 제기자는 소송으로는 해결하기가 싫어서 중재에 의해 해결하려다 보니 당사자간에 찬반의 언쟁까지 생기게 된다.

한국의 무역상의 입장에서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시간적 여유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해결에 임하지 않을 수 있다. 소송에 의할 경우 외국의 원고는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될 것이란 것이 한국 무역상의 계산이다. 이러한 경우 정부로서는 정책적 견지에서 외국 상대방이 원하는 방법(소송이든 알선이나 중재이든)에 의해 해결해 주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외국의 당사자가 중재를 원할 경우 정부가 중재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때문에 한국의 무역상들은 적어도 클레임을 내고 중재는 받을 수 있는 사전적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클레임을 적게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한상사중재원은 소임을 받았고 훌륭히 그 역할을 맡아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WTO의 기능이 활성화 되면서 계속 확대되는 무역과 국제경제관계를 이와 같이 약식의 알선과 반강제적 방식으로 중재를 선택하게 하려 한다면 반발과 부작용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재에 의하여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상 다양한 사전 홍보를 통하여 중재의 이용을 권장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매사가 그러하듯이 당사자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없는 시책은 부작용과 반감을 불러일으키므로 중재와 같은 자치적 해결수단에서는 강제보다 실리를 전제로 하는 제도적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중재를 이용한 당사자가 실제로 신속하고 납득이 가는 해결제도로서 경제적 이득이 느껴지게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Ⅳ. 국제상거래 발달에 상응한 기존의 개혁조치들

1. 「UN」의 개혁 노력

「UN」은 세계평화의 유지는 물론 국제간 보장된 거래를 통하여 경제의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여왔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중재제도를 유효한 분쟁처리제도로 선택하고 이의 국제적 통일을 시도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 국제민간기구별, 경제블록별로도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시도의 결과 「UN」에서는 장시간에 걸친 노력 끝에 소위 「뉴욕」협약을 탄생시킨 것이다.

뉴욕협약의 원명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 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June 10. 1958)이다.

이는 1958년 6월 10일 뉴욕(UN본부)에서 채택되었다고 해서 약칭 뉴욕 협약이라고 부른다.

UN은 뉴욕협약의 성립을 위하여 우선 민간 경제기구 및 국제학술단체들과 협력하여 이 협약의 기초를 ICC(국제상업회의소)에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ICC는 1951년 리스본에서 총회를 열고 「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국제제도」를 창립하기로 결의하고 1953년 5월에는 「중재제도의 집행과 승인에 관한 협약 예비초안」을 작성하여 UN의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하였다.

UN경제사회이사회는 同예비초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1954년 4월 6일 회원국 가운데 8개국을 선정하고 그 대표들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초안을 검토한 후 협약초안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15]

동특별위원회는 1955년 5월 20일 UN경제사회이사회에 「외국중재재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초안」을 제출하였다. 경제사회이사회는 동협약초안을 각국 정부에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15개국 정부로부터 건설적 의견이 제출되었다.[16]

---

15) 회원국 8개국은 Australia, Belgium, Ecuador, Egypt, India, Sweden, U.S.S.R., United Kingdom이다.

16) 이들 15개국은 각각 Austria, Belgium, Brazil, Free China, Denmark, France, Germany, India, Japan, Korea, Lebanon, Mexico, Philippines, Swiss, U.S.S.R.이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는 동협약을 채택하기 위하여 1956년 5월 3일 전권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동초안을 상정하였으나 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수정을 한 후, 1958년 5월 20일 부터 1958년 6월 10일 사이에 UN본부에서 48개국 대표가 참석하여 개최된 전권회의에서 더욱 수정을 가한 후 동협약은 채택되었다.

2. GATT의 개혁노력

(1) 협정자체내의 문제들

WTO출범 이전까지 GATT는 국제무역에서 다자간협력이라는 개념을 구현시켜 각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고 또한 최혜국특혜원칙을 내세워 실질적인 국제무역에 관한 대부분의 문제를 포용하여 왔다. 그러나 GATT의 숭고한 취지와 목적은 여러 가지 문제와 의문을 내포하고 있었다.

① 관세 인하와 무역 장벽제거라는 목표들이 과연 당시의 기대만큼 실현되었는가, 또는 관세인하와 무역장벽의 철폐가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만큼 이루어지고 무차별적이고 공평하게 이루어졌는가는 의문이다.

② GAAT의 허약한 권한의 축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GATT는 붕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GATT에서 인정되고 있는 많은 예외조치의 확대적용, 자의적인 규정해석, 회색지대조치의 확산은 모두 GATT의 역할을 약화 시켰고 또 이러한 GATT침해를 다스릴 GATT의 통제력은 퇴화되었다.

③ GATT에 규정된 의무의 위반이나 그에 대한 주된 분쟁해결 절차는 GATT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강제수단과 분쟁해결조항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강제수단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역할이 의문스러운 것이다. 특히 GATT는 무역장애를 없애는 데 주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래상에서 생기는 분쟁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④ GATT의 규정에는 명확한 단일 분쟁 해결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분쟁해결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절차가 30개가 넘는 조항에 언급되고 있으며, 체약국들로 하여금 GATT 와 협의토록 의무화하고 있는 조항만도 22개에 달하고 있다. GATT는 협정자체에서는 구체적으로 명기된 권한은 아니지만 분쟁해결

수단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 절차가 이루어진 예가 있다.[17] 예컨대 GATT창설 초기에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 그 결정은 체약국단의 의장에 의뢰하여 그의 결정을 채택하는 등의 방법이 그것이다.

⑤ GATT의 분쟁해결 절차는 당사자에게 협상을 통해 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분쟁이 끝나는 시점과 이로 인한 어떤 교섭이 새로이 시작되는 시점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어떤 분쟁해결을 위한 교섭이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되어 있다.

⑥ 어떤 분쟁해결이 GATT의 어떤 정책 형성과 관련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 다시말하면 분쟁이 새로운 정책형성으로 연결되거나 또는 제안된 어떤 정책에 대한 논쟁자체가 하나의 분쟁이 될 수도 있다.

GATT의 제규정 가운데 분쟁해결과 제재조치에 관한 가장 중심적 규정은 제22조와 제23조이다. 제22조는 비교적 단순한 조항으로서 GATT협정의 운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양국간 협의에 의해 분쟁이 원만히 타결되지 못할 경우 체약국 공통의 협의에 이를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3조는 GATT가 설립될 당시 너무나 허술하게 출범하였기 때문에 회원국에 대한 강제력이 없었다. 출범의 진지한 내용은 세계무역기구와 같은 강력한 기구였으나 각국의 이해득실에 밀려 세계무역기구의 총칙에 불과한 조항의 나열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고로 GAAT는 회원당사국의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조항이다. GATT설립 이전에는 무역마찰로 인한 상대국의 피해에 대해서는상호간에 상응한 보복이 이용되고 있었다. GATT 제23조는 의무를 위반한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이 조항의 위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즉, 상대국에 의한 피해와 똑같은 정도에 한해 제재를 가하는가 또는 피해범위를 초과하여 대항조치(즉 특허의 정지)도 가능한가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GATT의 성격이 국제기구로서 갖추어야 할 조직의 강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관찰할 수 있지만 특히 국제무역 분쟁 해결의 메카니즘으로서의 GATT의 역할 강화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많은 GATT 회원국에 의한 빈번한 GATT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은 1947년에 타결된 관세양허에 관한 잠정적인 다자조약으로서의 GATT를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법적 제도적인 기구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이끌어 내는데 견인차의 역할

17) John Jackson, *World Trade and Law of GATT*(한국무역협회 번역) p.370 참조.

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GATT는 무역정책수단의 수행을 위한 종합적인 실제 규정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체약국단(CONTRACTING PARTIES)의 결정에 의하여 회원국간의 무역분쟁을 해결하거나 GATT에 위반되는 각국의 무역제한조치들을 GATT법에 일치시키기 위한 상세한 다변적인 분쟁해결절차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무역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기능을 하였다고 하겠다.

GATT의 분쟁해결절차는 GATT가 의도하는 분야에서는 과거에 각 회원국이 무역정책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관행상 원용하여 오던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가능한한 사용하지 말고 다양한 외교적 또는 법적인 조치들을 통해 협상하도록 권하고 있다. GATT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GATT를 위반하지 않은 조치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일방체약국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에는 분쟁해결절차를 원용하여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18]

GAAT는 결국 회원국들의 무역정책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만 당사자간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어서 상인간에 이루어지는 분쟁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문제는 WTO가 출범한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은 점에서 GAAT의 한계를 알 수 있다. 다만 WTO는 이를 인식하여 상인간의 분쟁은 국제상사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누차 권고하는 선에서 자체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하겠다.

(2)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개선 노력

우루과이라운드는 동경라운드의 후속 라운드로서 GAAT의 보완을 위한 것이라고 할수 있다. 이는 후일 WTO의 이름으로 새출발을 한것이므로 그 개혁 노력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도 국제상거래에서 생긴 분쟁에 대하여는 취급된 바 없다. 동경라운드 이후에는 1982년 각료회의 선언중에 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노력이 있었으나 이 역시 국가간 무역정책에서 생기는 당사국간의 마찰을 대상으로 한것이었다. 또한 1984년 제 40차 체약국단회의에서 채택된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결정이 부분적으로 GATT 분쟁해결 절차의 미비점을 보충하였으나 이것도 국가정책에 대한 것이었다.

---

18) 서헌제, 조대연, GATT의 무역분쟁해결절차(국제거래법학회 학술발표회) p.2.

전자통신기기의 발달과 신기술의 개발로 국제무역의 규모와 거래 대상국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종래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국가간 무역마찰도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기존의 GATT규정만으로는 이와 같이 이질적이고도 복잡한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게 되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심으로 하여 절차의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19] 그러나 이것도 무역정책상의 마찰을 해소하는 것임을 추기한다. 그럼에도 여기서 이를 논하는 것은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개선의지를 참고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언급하기로 한다.

첫째, 현재 복잡다기하게 분산되어 있는 분쟁 해결 절차를 집중시켜 이를 단일화, 정형화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코드에 의한 절차와 23조 등에 의한 절차로 2원화되어 있는 현행 분쟁해결 구조는 혼동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히 있어 통합되어야 한다.

둘째, 분쟁해결절차의 가장 중심이 되는 패널은 대개 제네바에 거주하는 외교관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자국의 이해관계로부터 완전히 떠날 수 없으며 또 GATT의 규정이나 법률적인 면에서 정통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정부 관료가 아닌 민간인인 전문가들이 보다 많이 패널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절차의 부당한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쟁해결의 각 단계인 패널의 구성에서부터 조사절차의 진행, 보고서의 작성과 채택 등에 이르기까지 보다 엄격한 시한을 규정하여야 한다.

넷째, GATT이사회에 의한 패널보고서의 채택이 만장 일치에 의하고 있기 때문에 분쟁 당사국을 위시해서 어떤 국가에게도 이를 저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사실이 빈번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따라서 보고서 채택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분쟁 당사국 또는 분쟁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국을 배제시키든가 아니면 만장일치제 대신에 다수결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어 왔다.

다섯째, 패널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당해 분쟁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체약국단이 내린 권고나 판정의 결과를 당사국이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이를 강제할 만한 수단을 결여하고 있다는 것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그 이행을 확

19) Minisrerial Declaration adopted on 29 November 1982(BISD 29 S/9), Section on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와 같이 GATT에 의한 분쟁해결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회원국간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협상의제의 하나로서 Punta del Este 선언에 포함되었다.

협상은 분쟁해결협상그룹(Negotiationg Group on Dispute Settlement)에 의하여 진행되어 왔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각 회원국으로부터 협상에서 다루어야할 사항에 관한 제안을 받아 이를 항목별로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다음 단계로는 이러한 제안을 분류하고 심사하여 각 의제별로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우리 나라는 분쟁해결협상그룹의 제5차 회의에서 앞서 주요 쟁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한 서면제안을 제출한 바 있다.[20]

이와 같이 분쟁해결절차의 개선 필요성은 많은 회원국에 의하여 강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우루과이 라운드의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성공적으로 협상이 진행되어 이미 89년 4. 12.에 「GATT분쟁해결 규정과 절차에 관한 개선」(Imporvements to GATT Dispute settlement Rule and Procedurs)(이하에서 '89 Improvements로 약함)이라는 합의 사항을 채택하고 이를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21]

'89 Improvements의 시행 후에도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1990.12.에 발간된 의장초안에 의하면 패널의 구성 및 보고서 채택방법 등 몇가지 쟁점 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합의에 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우루과이 라운드에서의 중요한 성과중의 하나는 패널판정에 대한 상설 상소검토기구의 설치와 그 절차를 마련한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종래 패널판정에 불만을 가진 당사국이 판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분쟁해결절차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상소절차를 도입함으로써 GATT의 분쟁해결절차는 그 사법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GATT 체약국단은 패널판정에 대한 상소를 전담하기 위하여 GATT업무와 법, 그리고 국제무역에 정통한 민간인 중에서 4년 임기로 선임된 7인의 위원으로 상설 상소검토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각서 H1. (a)-(c)).

---

20) 서헌제, 조대연 : 전게논문, p.5.
21) GATT document L/6489, BISD 36S/61.

상소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적격은 분쟁 당사국에만 한정되면 반드시 법률문제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상소검토는 3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하게되며 절차는 보통 6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하지만 상소검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일 까지 연장될 수 있다. 위원회에 의한 상소보고서의 채택은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GATT이사회가 패널 보고서 또는 상소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당해 분쟁에 대하여 내린 권고와 판정은 분쟁 당사국이 이를 수용하여 신속히 조치를 취하여야만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 당사국이 이러한 이사회의 권고와 판정을 이행하는 데에는 보통 자국의 국내법이나 제도의 개편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90 의장초안에는 이사회의 권고를 수용하는데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의 설정과 향후 그 이행여부의 감독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일단 패널 보고서가 채택된 후에는 어떤 회원국이라도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제기할 수 있고 이사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의제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0 의장초안은 당사국의 합의하에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모든 다른 회원국에게 이를 사전에 충분히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90 의장초안 0.2.) 임의적인 중재절차를 도입하고 있다. 이 중재절차는 GATT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하바나 헌장 제94조 2항의 내용과 흡사한데 이를 도입함으로써 GATT 분쟁해결절차는 당사국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의 수단을 제시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중재는 국가간의 정책에 대한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재절차는 이전의 GATT법에 의하여도 가능하였으며 사실인정(finding)에 구속력을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패널형식을 취하는 중재가 실재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중재를 도입한 위 규정은 이러한 관행을 인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별다른 내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

다만 중재회부의 결정과 중재 판정에 대하여 GATT에 통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중재와 GATT의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GATT의 분쟁해결절차에 대하여는 외교적인 협상과정의 연장으로 보는 시각과 이를 보다 엄격한 법적인 분쟁해결절차로 보는 시각이 대립되고 있

다. 전자는 주로 협상력에 있어 강한 입장에 있는 선진국들이 취하는 견해로써 분쟁해결절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거나 어떤 나라가 책임이 있는가를 결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GATT위반조치를 가급적 빨리 종료시킬 수 있도록 진행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GATT위반조치를 가급적 빨리 종료시킬 수 있도록 진행하는 데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GATT를 국제무역체계의 운용을 위한 법적 규율의 체계로 파악하는 견해는 분쟁해결절차를 사실 인정과 법의 적용 그리고 위반에 대한 제재를 확정하는 법적인 절차로 보며 이는 주로 협상력이 약한 개발도상국이 선호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분쟁해결절차는 이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무역분쟁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여론에 힘입어 점차 그 법적인 성격이 강해지고 있으며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어 이미 95년부터 WTO가 출범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동안 다양한 논문이나 세미나에서 WTO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하여 논급이 있었으나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논의한 각 회원국간의 무역정책상의 마찰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국한 되었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세계무역사에서 WTO의 출범은 하나의 큰 변혁이라고 할수 있는 데 그 동안 각 국가들은 무역에서도 교역효과의 증대에만 관심이 컸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부를 살펴 보면 서비스의 상품화, 지적재산권의 강화에 따른 제품 가격의 변동과 기술 이전의 폐쇄성, 농산물의 개방에 따른 국가별 산업구조의 개편 등 다양한 경제적 상황변동이 불가피 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무역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양태의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상이다.

본 논문에서 살핀 바와 같이 WTO시대에는 분쟁의 처리 방법도 새롭게 변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대체 방안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검증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국제상사중재제도가 WTO 시대에 다양하고 신속한 분쟁을 흡수 처리하기 위하여는 이제까지 미진하게 추진 되어온 국가별 차이가 나는 이질적 중재법규들을 모델 중재법 또는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② 이제 까지 중재에 관하여 추진되어 온 국제조약, 예컨대 뉴욕협약 등은 WTO시대에는 신속성과 편리성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중재에 관한 통합법의 제정을 통해 명확하고 신속한 클레임 처리를 확보해야 한다. 중재가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만 앞으로 소송과의 비교에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이다.

③ 클레임은 후생 효과면에서 여러 의미를 준다. 물품의 수입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이 보다 더 큰 신용 상실이라는 고통을 주고 있음을 검증한 바 있다. 이를 상쇄하는 방법은 클레임을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역할을 상사중재가 계속 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④ 클레임은 개별 상인에게 피해를 주는 정도를 떠나 국가적으로도 비교우위에 영향을 주는 것을 검증 한 바 있다. 따라서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중재제도의 건전한 개선과 국제적 통일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⑤ 그 동안 GAAT, UNCTAD, UN 등의 기구와 우르과이 라운드를 통해 WTO의 출범에 이르기 까지 국제적인 노력에 대해 검토하였지만 거의가 국가 무역정책상의 마찰을 축소하고 방비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국제상사중재제도의 개선과 효율성을 높여 WTO 시대에 새로이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을 수용하고 소비자들이 만족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새롭게 정비 되어야 함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앞으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중재제도의 개선방안을 유도하는 것으로 목적을 다했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Since the Start of WTO in 1995, world trade volume was substantially increased as much as over $250 billion by lifting the trade barriors This effect brought new problem of increasing disputes. Significantly an ever increasing atention is paid to the question of means and procedures of settling such disputes by arbtration.

The problem of arbitration has indeed become most popular with all those who take interest in legal aspect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various spheres. In practice arbitration seems to renovate its function to take over new disputes arising from electronic transaction such as internet trade.

Looking at the actual use of arbitration, its merits than litigation should cover new aspect concerning new kind of claims caused by new type of transaction. The efficient procedure for dispute will help every country save loss of profit by the delay of settlment. This thesis aims to facilitate the appearence of more efficient arbitration procedure for dispute settlment system.

참 고 문 헌

蔡 旭 '紛爭解決節次', "UR 총점검: 最終協定의 분야별 평가(증보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12.

蔡 旭 "國際貿易紛爭의 現況과 GATT 役割,"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11.

GATT/Trade Negotiations Committee.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The Uruguay Round." April, 1994..

WTO,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1994.

WTO,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1994.

Aksen, Gerald. Enforcing Arbitration Clauses,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1970

Aksen, Gerald, A Practical Guide to International Arbitration,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1978.

Electronic Data Interchange and Paperless Trade: The Implementation Guide,

Electronic Data Interchange(EDI) Systems for transport Related and trade facilitation Activities, U.N., 1990.

Emmelhainz, Margarette A., "EDI: A Total Managements guide." Van Nostrand Reinhold, 1990.

Emmelhainz, Margaret A., Electronic Data Interchange, A Total Management Guide, Van Nostrand Reinhold, 1990.

Hendry Mike, Electronic Data Interchange, Artech House, In C, 1993.

Kimberley, Poul, "Electronic Data Interchange" McGraw-Hill, Inc, 1991.

KUN'EDIFACT Directiry D.95A, KEB, 1995.

Sokol, P.K, "EDI: The Competive Edge," Intertext Publications McGraw-Hill Book Companies New York, N. Y. 1989.

UN/EDIFACT Messages and Framework, UN, 1993.

Walden Ian, and Braganza, Ashly, EDI: Audit and Control, NCC Blackwell, 1993.

Walden Ian: EDI and Law, Blenheim Online, 1989.

Wheble, Bernard S. "The Legal Problems In the Use of Automatic Data Processing in International Trade" SWIFT, London, 1982.

UNECE, Report on Action Programme relating to Commercial and Legal Aspects of Trade Facilitation TRADE/WP.4/R.787 (17 February 1992)

UNECE, Recommendation for UN/EDIFACT Message level Security, TRADE/WP.4/R.936 (4 February 1993)

UNECE, EDIFACT Security Implementation Guidelines, TRADE/WP.4/R.937(4 February 1993)